

-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 : 오중석 의원 외 12명

나. 의안번호 : 제1061호

다. 제출일자 : 2019. 10. 15.

라. 회부일자 : 2019. 10. 22.

2. 제안사유

○ 특수여객운송사업 관련 업체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해 행정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, 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, 특수여객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의 상향을 통해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여 안전관리 강화와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2호)

나.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해 규정함(안 제15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간 : 2019. 10. 25 ~ 2019. 11. 1

○ 제출의견 : 의견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) : 원안가결

○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공감하며, 등록기준 대수를 5대 이상으로 상향하여 안전관리 강화 및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함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상향 조정하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 안전한 운송사업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“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<sup>1)</sup>의 등록기준을 1대 이상으로 하되 시·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”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법 시행규칙”) [별표3]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

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(이하 “운송사업자”)가 갖추어야 할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5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운송사업자가 사무실 및 영업소 등의 운송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

-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’61년 3월 관련 법<sup>2)</sup>이 제정될 당시에는 영업을 하기 위한 최저기준 대수 제한이 없었으나 ‘85년 4월 관련 법령<sup>3)</sup>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최저기준을 “차량 1대”로 규정하고

---

1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) 2 나.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(유골을 포함한다)를 운송하는 사업  
2) 자동차운수사업법[시행 1962. 1. 1.] [법률 제916호, 1961. 12. 30., 제정]  
3)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[시행 1985. 5. 31.] [교통부령 제818호, 1985. 4. 30., 일부개정]

있어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임

- 또한 당초 면허제로 운영되던 사업이 '93년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업체와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'18년말 현재 사업체는 130개 업체로 10배, 차량대수는 595대로 약 3.8배가 증가하였음

<면허제 이전·이후 서울시 특수여객 업체 및 차량등록 현황><sup>4)</sup>

구분	면허제(1993. 8)	등록제(2018. 12)	증가	증가율
회사	13	130	10배(117)	900%
차량대수	153	595	4배(442)	289%

- 서울시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현황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차량 1대로 영업하는 1인 업체는 '18년말 현재 43%(130개 업체 중 56개 업체)에 이르고, 1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10개 업체로 8%에 불과한 상황임

<규모별 등록대수 현황(차량 대수별 현황)><sup>5)</sup>

서 울	0대		1대		2대		3대		4대		5대		6~9대		10대 이상		총계	
	업 체	등 록 대 수																
	1	0	56	56	19	38	14	42	5	20	7	35	18	131	10	273	130	595

- 한편 서울시 특수여객 등록대수는(595대) 서울시 1일 평균 사망자 수(124명<sup>6)</sup>)에 비해 약 4.8배나 많은 상태로 특수여객의 공급과잉

4) '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'-면허제 이전·이후 서울시 특수여객 업체 및 차량등록 현황자료

5) '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'-규모별 등록대수 현황(차량 대수별 현황) 자료

6) KOSIS(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) 국가통계포털-'2018년 서울시 원인별 사망자 수' 45,219명 / 365일=123.8명

## 이 우려되는 상황이며

‘93년 특수여객 자동차 가동률이 69%<sup>7)</sup>였던데 비해 ’18년의 경우 21%<sup>8)</sup>로 하락하여 영업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고, 이로 인한 업체간의 과당 경쟁, 잦은 폐업과 진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

- 동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여객 운송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5대 이상으로 상향토록 함으로써

특수여객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특수여객 운송사업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- 다만, 동 개정조례안은 특수여객 운송사업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시장 안정화 및 행정적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진입장벽이 일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이후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를 추가하고 있는 바, 이는 현행 조례에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이 새로이 반영됨에 따라 관련 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음

---

7) ‘93년 등록대수 153대, 1일평균 사망자수 105명, 사망자수 대비 가동률 69%

8) ’18년 등록대수 595대, 1일평균 사망자수 124명, 사망자수 대비 가동률 21%